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9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2015. 1

교통건설국

#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1
□ 교통행정과	2
□ 교통지도과	7
□ 건설관리과	12
□ 토 목 과	16
□ 치 수 과	31
□ 부동산정보과	60

#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7팀



□ 인 력 ----- 196名

구 분	총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전문)	임기제
총 계	196	1	6	42	86	39	19		3
교통행정과	36	1	1	6	14	6	5		3
교통지도과	37		1	8	15	7	6		
건설관리과	24		1	3	7	11	2		
토 목 과	31		1	7	14	8	1		
치 수 과	43		1	9	26	4	3		
부동산정보과	25		1	9	10	3	2		

# 교통행정과

□ 조직 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별정 (전문)	임가제
정 원	38	1	1	7	11	14	1		3
현 원	36	1	1	6	14	6	5		3

□ 업체 및 시설물 현황

마을버스	시내버스	개인 택시	화물 자동차	자전거 보관소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
10개 업체 92대	2개 업체 219대	1,301대	2,375대	85개소 4,141대	418개	15개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대)

계	승용	승합	화물차	특수	이륜차	건설기계
135,089	95,458	5,772	13,349	291	17,988	2,231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

무허가건축물 철거부지인 공덕동 4-64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
- 위 치 : 공덕동 4-64 외 18개 필지
- 건설규모 : 지상 2층3단 자주식 노외주차장 조성(37면)
- 총사업비 : 총 3,067백만원(보상비 1,200백만원, 건설 1,867백만원)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구 투자심사 의뢰
- 2015. 1 ~ 2 :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 등) 및 관련부서 협의
- 2015. 2 ~ 3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2015. 3 ~ 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5 ~ 10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 2015. 7 ~ 12 : 토지 및 물건 보상(교통행정과→건설관리과)
- 2016. 2 ~ 12 : 주차장 건설공사 발주 및 준공

### □ 소요예산 : 1,300,000천원 (구비)

- 토지매입비 : 1,200,0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00,000천원

## 2.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자투리땅 주차장, 그린파크 사업 등 여건에 맞는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유희부지 임대, 그린파크 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차장 조성대책 추진

### □ 세부 추진계획

#### 1)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추진목표 : 10면 이상
- 조성대상 :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심 미관저해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자투리땅
- 추진방법 : 관리부서 또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주차장 조성

#### 2) 그린파크 담장허물기 사업

- 추진목표 : 15동 30면
- 사업대상 : 주택의 담장·대문을 허물어 법정부설주차장 외 추가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예정인 주택 제외)
- 사업내용 : 주차면 및 녹지조성, 무인 자기방범시스템(CCTV) 설치

#### 3) 대형건물(아파트 포함) 유희 부설주차장 개방

- 추진목표 : 1개소 이상
- 개방대상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지역내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등
- 추진방법 : 건물주(입주자 대표회)와 협약을 통해 유희 부설주차장 일부를 구가 임대하여 주차장 부족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
- 임 대 료 : 이용자로부터 받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전액 지급

### □ 소요예산 : 155백만원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20백만원
- 그린파크 사업 : 135백만원(구비 54백만원, 시비 81백만원)

### 3.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체납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로 올바른 자동차 소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대상 : 자동차관련 과년도 체납과태료(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11종)
- 사업규모 : 과년도 총 체납액( 25,086건 / 7,879백만원)
- 정리목표 : 7,526건 / 2,363백만원(과년도 총 체납액의 30%)
- 사업내용
  -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체납자 재산 압류처분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 추진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세부추진계획

- 체납과태료 징수 및 일제 정리계획 수립(1월)
-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고지서 : 홀수달, 안내문 : 짝수달)
-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및 납부 독려(연중)
-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연중)
- 체납자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압류처분(연중)
-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상/하반기)
- 폐차대금 압류 및 추심 협조문 발송(분기 1회)
- 체납자 기초자료 및 주소 정비(연중)

#### □ 소요예산

- 소요예산(구비) : 172,199천원

## 4.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자전거 이용 확대로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등) 설치 및 관리
  -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수리 포함) 운영
  - 자전거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직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세부추진계획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 사업내용 : 자전거무인대여소 운영 및 유지관리(공공자전거 교체)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수리센터 포함) 운영  
자전거보관소 세척 및 방치자전거 수거 등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직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 사업내용 : 직원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상품권) 제공(월 20,000원×80명)  
업무용 자전거 이용우수 부서 포상(1백만원)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사업내용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시비지원 사업)

□ 소요예산 : 280백만원(구비)

# 교통지도과

□ 조직 현황



□ 인력 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40	1	6	13	18	2	
현원	37	1	8	15	7	6	

□ 장비현황

주·정차 단속 CCTV	차 량			
	계	CCTV 탑재	단속차량	견인차
67대	11대	6대	4대	1대

**【주차장 현황】** ----- 총 10,368개소(동) 92,490면

유형	개소(동)	면수
시설 주차장 (견인보관소 포함)	12개소	1,408
노상·노외주차장	15개소	1,015
거주자 우선주차장	16개동	4,376
민영 노외주차장	41개소	2,045
건축물 부설주차장	10,284개소	83,646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신뢰성 제고 및 구민 불편 최소화
- 어린이 단속체험단 운영,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선진주차문화 확립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 및 단속 알림시스템 지속 운영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어린이보호 캠페인 실시
  - 불법 주정차단속 「어린이체험단」 운영
  -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견인업체 및 보관소 지도·점검

### □ 세부추진계획

-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한 고정형 CCTV 설치(5대)로 구민의 불편 최소화 및 CCTV의 단속 알림을 통한 선진주차 질서 확립
- 소방통로 확보 합동훈련 실시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래시장 주변 및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탄력적 단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불법 주정차단속 「어린이 체험단」 운영 : 여름방학, 겨울방학
-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월 2회
- 견인업체 및 보관소 지도·점검 : 상반기, 하반기

### □ 소요예산 : 457,567천원

- 불법 주정차단속 장비(무인단속카메라 및 서버 등) 구매 : 252,210천원
-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장비 유지비 : 205,357천원

## 2.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 기능미유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학교 유휴공간,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사업규모 : 관내 부설주차장 10,284개소 83,646면 (아파트 제외)

### □ 세부추진계획

-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 기능미유지 등 위법행위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조사요원 활용 전수점검 후 담당공무원 위법사항 확인
    -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정확한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법사항 시정명령(2회) 후 행정처분
- 학교·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으로 주차난 해소
  - 추진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확보된 건축물 중 최소 2년 이상 야간개방 할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 지원

### □ 소요예산 : 50,378천원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등 : 26,778천원
- 부설주차장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3,600천원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 : 20,000천원

### 3.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징수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주정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총체납액 : 234,355건 / 11,794,000천원
- 정리목표 : 49,215건 / 2,477,000천원
- 사업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소유재산(자동차, 부동산, 급여 및 예금등)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
  - 대체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징수 담보물권 확보 강화
  - 인터넷 및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등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및 독촉·압류 고지서 수시 발송

#### □ 세부추진계획

- 고액·상습체납자 적기 채권확보 활동 강화
  - 각종 재산압류(부동산·신용카드매출채권·급여 등)로 다각적인 체납징수
  - 예금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 차령초과 말소 등 차량 대체압류등록을 통한 체납징수 담보물권 확보
-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시행 징수활동 강화
  - 법원공탁금압류, 신용정보제공, 거주자우선주차 제외 등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된 시스템 운영

#### □ 소요예산 : 654,978천원

- 우편요금 및 교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 636,978천원
- 주정차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버교체 : 18,000천원

## 4.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의 운행질서 확립을 통한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주민 서비스 향상 도모로 대시민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여객·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체
- 중점 단속내용
  - 버 스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등
  - 택 시 : 승차거부, 합승,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징수 등
  - 화 물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동차표시위반 등

### □ 세부추진계획

- 상시단속 : 자체단속
  - 이용승객 불편신고 및 언론 보도내용 집중단속
  - 심야 불법운행 택시 및 시내·마을버스 법규위반 사항
  -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단속(전세버스, 화물) 등
- 특별단속 : 합동단속(설날·추석 연휴, 연말)
  - 서울시 단속반과 경찰공무원, 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버스구민평가단 운영
  - 대중교통 버스의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및 친절서비스 향상 도모
- 운수업체 지도점검 강화 : 연 2회

### □ 소요예산 : 24,646천원

- 버스구민평가단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비 : 9,936천원
- 법규위반차량 단속관련 일반 운영비 : 14,710천원

# 건설관리과

□ 조직 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별정 (전문)	임기제
정 원	26		1	5	9	9	2		
현 원	24		1	3	7	11	2		

□ 국·공유지행정재산 현황

계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필지	면적(m <sup>2</sup> )	필지	면적(m <sup>2</sup> )	필지	면적(m <sup>2</sup> )	필지	면적(m <sup>2</sup> )
7,275	3,494,166	3,696	1,088,392	2,801	1,770,788	778	634,986

□ 거리가게 현황

계	포장마차	손수레	좌 판	차량노점	기타
332	91	89	45	61	46

□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75	28	47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

-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기능 유지 및 재정수입 증대
-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공공기능 회복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업대상 : 국·공유 행정재산(도로)
- 사업내용
  - 무단점유 추정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점용허가 유도,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추진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추진
  -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용도폐지 추진
- 추진근거 : 국유재산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 □ 세부추진계획

-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
-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2차년도) : 2015. 1월 ~ 12월
  - 국·공유 행정재산 정밀실태조사
  - 도로점용허가 실태조사
  - 차량진출입 점용허가 실태조사
- 정기변상금 부과 : 2015. 3월, 9월
-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 2015. 3월
- 원상회복 및 점용허가 등 사후조치 추진 : 연중

### □ 소요예산 : 53,800천원

-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 53,800천원

## 2. 적정한 손실보상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갈등을 최소화한 적시·적정 보상을 실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업대상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 보상규모 : 66,962백만원(시비:48,200백만원, 구비: 18,762백만원)

### □ 세부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추진

대 상 사 업 명	위 치	면적 (㎡)	보상규모(백만원)
계	-	9,811.9	66,962 (구비18,762, 시비48,200)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사업 (창전동, 동교동 구간)	와우산로32길 32일대	434.2	45,000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	만리재로16길 20-5 일대	366	12,00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연남로 80(쌍마빌라)	1,646.8	9,770
서교 경관광장 조성사업	신촌로 34-1 일대	507.9	5,792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마포구 중동 151-5 일원	6,538	3,200
성미산 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	성산동 64-22 ~ 성산동 44	319	2,000

- 미불용지 보상 추진

구 분	건수	위 치	지 목	면적 (㎡)	사업규모 (백만원)
계	2	-	-	68.0	79
구비보상	2	마포대로7길 31 외 1필지	대	68	79

- 보상 관련 소송수행 : 수용보상금 증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 소요예산 : 6,534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및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등

### 3.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구간별 집중정비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구간별 맞춤형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기존 거리가게 근절 및 신규 거리가게 원천차단으로 기초질서 확립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홍대입구, 상암지구 등 민원집중지역 중심 구간 맞춤형 단속실시
- 사업내용 : 거리가게 총량제(현 332개소) 및 실명제 실시로 점진적 감축 추진
- 세부내용
  - 코스별 거리가게 특성 파악 실질적인 단속강화  
(1구간: 마포로/ 2구간: 신촌-홍대-연남/ 3구간: 연남-성산-상암)
- 추진근거 : 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117조 등)

####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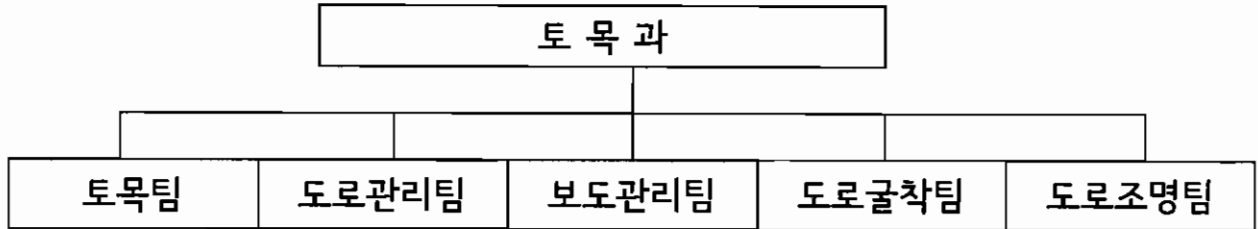
- 거리가게 및 도로상 적치물 정비 : 2015. 1월 ~ 12월
- 구간별 맞춤형 정비실시
  - 1구간 : 공덕- 아현-도화동 등 공덕시장 및 마포대로 주변  
(시장, 주택가 및 마포역 주변으로 차량 거리가게 등 집중단속)
  - 2구간 : 신촌- 홍대- 연남 등 젊은층 및 외국인 겨냥 거리가게 근절  
(홍대 상상마당 중심 먹거리 판매 손수레 차량 거리가게 집중단속)
  - 3구간 : 연남- 성산- 상암 등 관광객 및 상암동 가족단위 겨냥 거리가게 차단  
(면세점 인근 및 상암미디어시티 주변구간 상품, 먹거리등 신발생 거리가게 단속)

#### □ 소요예산 : 146,631천원

-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4명) 인력운영비 : 105,539천원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 41,092천원

# 토 목 과

□ 조직 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별정 (전문)	임기제
정 원	32		1	4	8	9	10		
현 원	31		1	7	14	8	1		

□ 장비현황

제설차	덤프차(2.5톤)	더블캡(1톤)	순찰차(0.4톤)	고소차(12m)	오토바이(100cc)
4대	2대	2대	1대	1대	3대

□ 도로 및 조명시설 현황

도 로					조명시설	
도로연장(km)	도로면적(km <sup>2</sup> )	주거가능면적(km <sup>2</sup> )	도로율(%)	포장율(%)	가로등	보안등
419	4.04	14.38	28.08 (시:22.06)	100	7,295燈	9,862燈

□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 현황

○ 도로 시설물

계	고가차도	지하보차도	일반교량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지하통로
20	1	1	2	1	2	10	3

○ 도로(교통)부속 시설물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블라드	방호울타리
2개소	10개소	173개	999개	1,454개소	1,713개	6,632경간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마포구민체육센터 진입로 확장공사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위 치 : 망원동 453-33 ~ 453-6
- 규 모 : 도로확장 B=6m→12m, L=168m
- 기 간 : 2015. 3. ~ 2015. 6.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6.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243,000천원(구비)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2. 주민 참여예산 사업추진(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시비지원사업

노후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행복감을 증대코자 함

### □ 사업개요

#### ○ 규 모

연번	위 치	규 모	소요예산 (백만원)
계	총 4건		245
1	1-1 월드컵로21길 24 ~ 40 (망원동)	도로정비(B=3.5~4m, L=101m, A=3.92@) - 기층개량 후 아스콘포장 A=3.92@	40
	1-2 성마산로1길 100 ~ 성마산로 5 (성산동)	도로정비(B=7m, L=550m, A=38.5@) - 아스콘 절삭후 재포장 A=38.5@ - 측구 및 경계석 개량 L=320m	100
	1-3 양화로 52 ~ 양화로6길 60 (서교동, 합정동)	도로정비(B=7m, L=260m, A=18.2@) - 아스콘 절삭후 재포장 A=11.2@ - 기층개량 후 아스콘포장 A=7@	75
	1-4 창천초등학교 옆 계단	계단정비(B=3m, L=15m, A=45㎡) - 계단정비 45㎡, 핸드레일 설치 30경간	30

○ 기 간 : 2015. 3. ~ 2015. 7.

○ 내 용 : 노후 및 불량 이면도로 정비

###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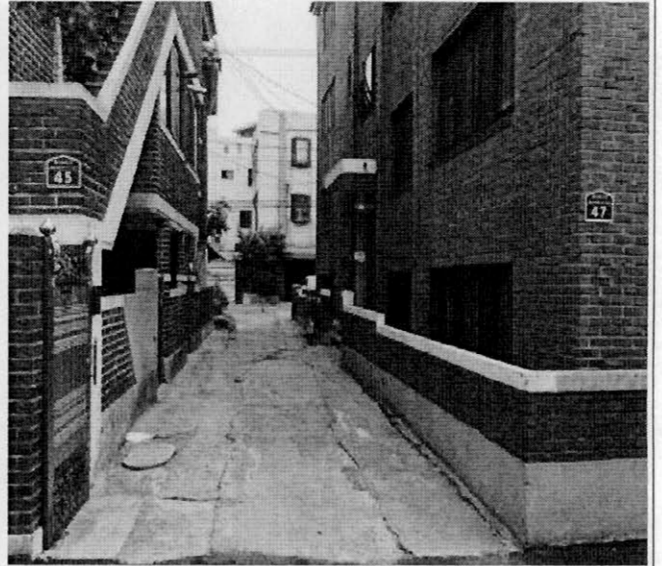
- 2015. 1. ~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7.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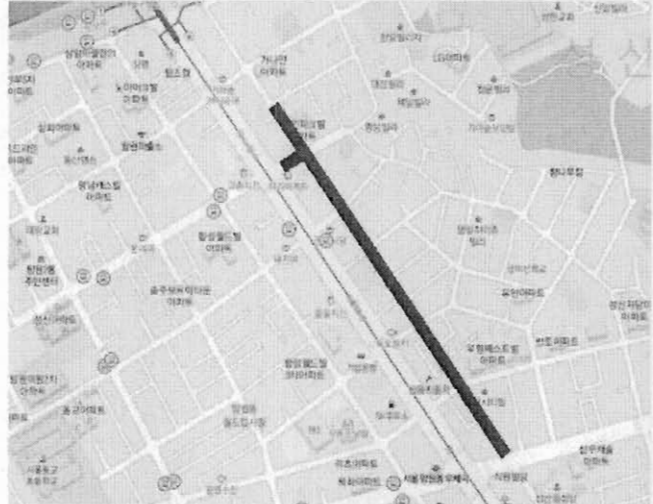
○ 사업비 : 245,000천원(시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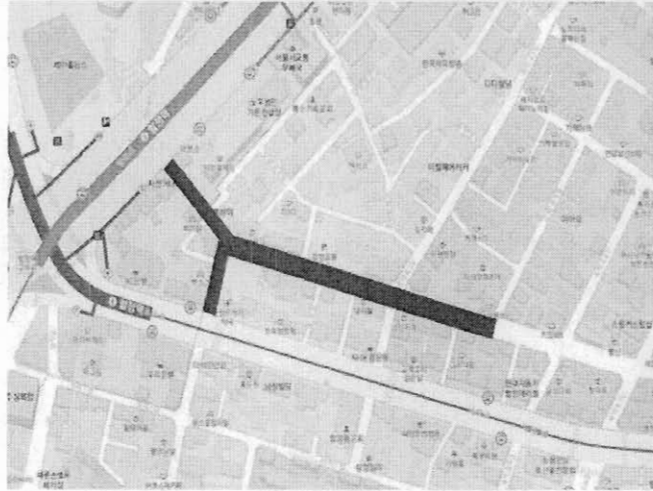
1-1. 월드컵로21길 24 ~ 40(망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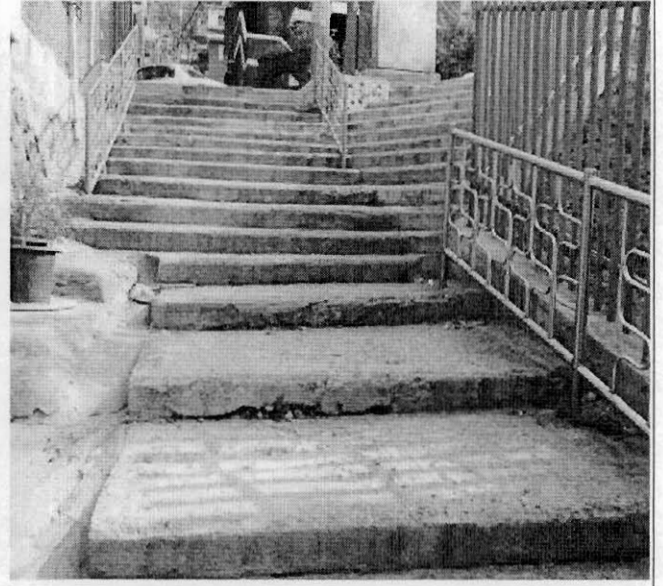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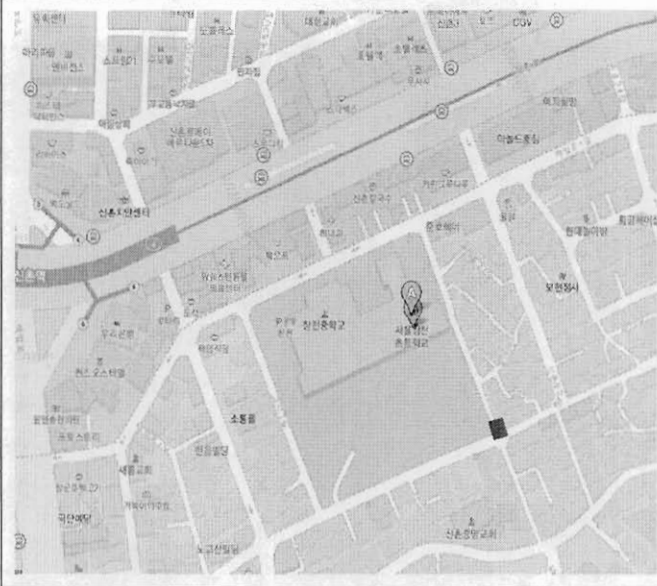
1-2. 성미산로1길 100 ~ 성미산로 5(성산동)



1-3. 양화로 52 ~ 양화로6길 60(합정동,서교동)



#### 1-4. 창천초등학교 옆 계단(노고산동)



### 3. 가로등 개량사업(3개사업) : 시비 지원사업

15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의 개량과 고효율 저용량 LED광원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0
- 사업대상 : 시.도상 가로등
- 사업개요

사업명	성암로 가로등 개량공사	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마포대로 LED광원 교체공사
구 간	가양대로~성암삼거리	대흥로~마포대로, 와우산로~서강로	마포대로
규 모	가로등 개량 68본	가로등 개량 71본	가로등 광원교체(80등)
사업비	500백만원	592백만원	100백만원

- 사업내용 : 15년 경과한 노후 가로등 및 LED 가로등 광원 교체
- 추진근거 : 15년 경과한 노후 가로등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공사 발주
- 2015. 3. : 공사 착공
- 2015. 10. : 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1,192,000천원(시비)

#### 4. 성산로 옹벽 정밀안전진단 시행 : 시비 지원사업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을 시행,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대 상 : 성산로 옹벽(성산로4길 2 ~ 방울내로11길 181 간)
- 규 모 : H=7.0m, L=1,080m
- 기 간 : 2015. 2. ~ 2015. 6.
- 내 용 : 특별시도상 자치구 위탁관리 시설물(성산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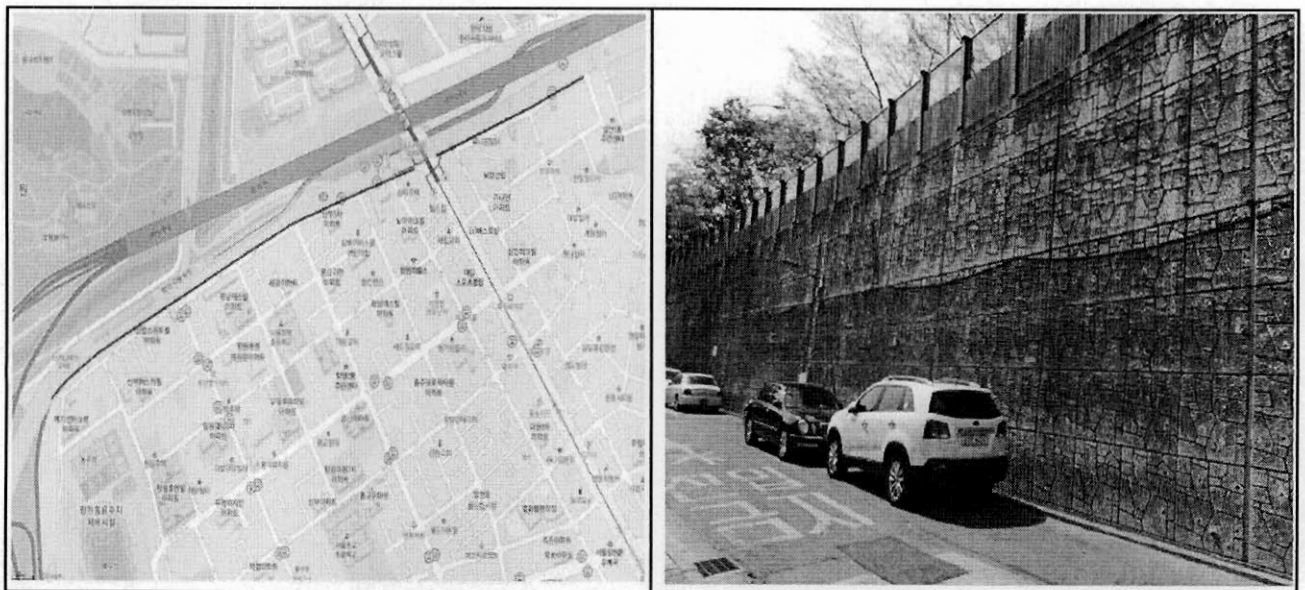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용역 발주
- 2015. 2. : 용역 착공
- 2015. 3. ~ 6. : 착공 및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준공

##### □ 소요예산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5.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주변 보도조성공사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주변의 보도 신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정차 질서 회복

### □ 사업개요

- 구 간 : 상암산로1길 67 ~ 79 간
- 규 모 : B=2.0m, L=125m, A=2.52@
- 기 간 : 2015. 3. ~ 2015. 6.
- 내 용 : 보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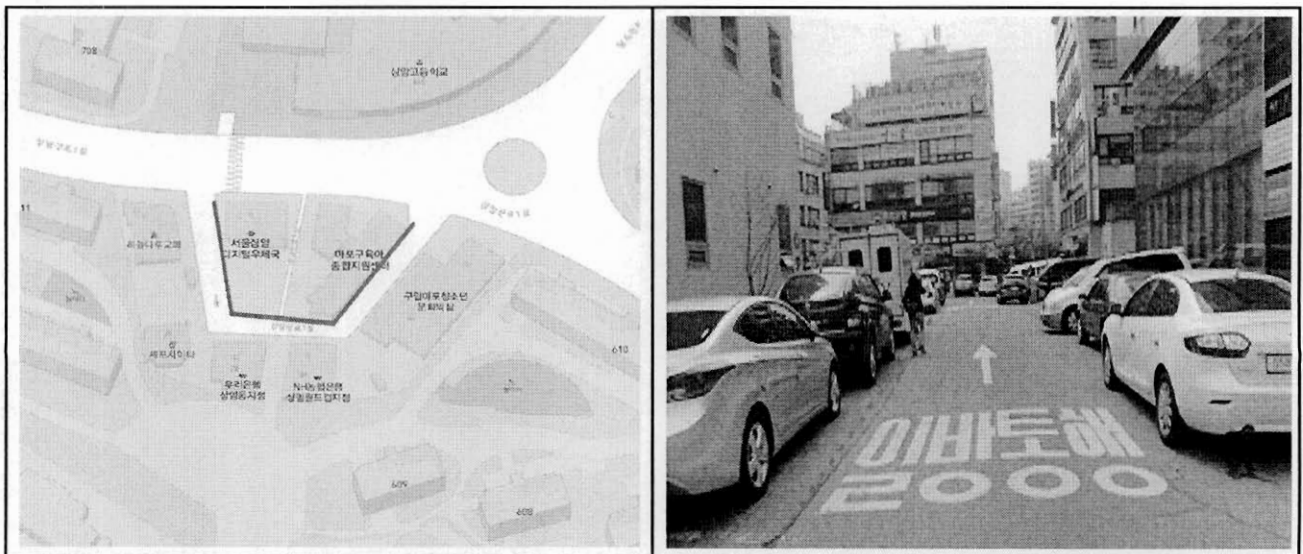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6.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49,500천원(구비)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6.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수시로 파손되고 심한 요철로 평탄성이 불량한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포장도로(구도)
- 규 모 : 아스팔트포장 300@, 보도포장 26@, 콘크리트포장 10@ 등
- 기 간 : 2015. 3. ~ 2015. 12.
- 내 용 :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재포장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12.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1,800,000천원(구비)

## 7. 관내 불량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보도요철, 물고임, 보도턱 등 불량한 보도블록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걸기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대 상 : 마포구 관내 보도
- 규 모 : 불량 보도정비 18@, 측구 및 경계석 정비 1,000m, 장애인편의시설(점자, 선형블록)정비 2.0@등
- 기 간 : 2015. 3. ~ 2015. 12.
- 내 용 : 보도요철 등 불량한 보도(측구포함) 재 정비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12.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180,000천원(구비)

## 8.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노후·훼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시설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도로(교통) 시설물
- 규 모

도로시설물								도로(교통) 부속물				
소계	일반교량	지하차도	고가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지하통로	도로옹벽	방음벽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블라드	방울타리
14	2	1	1	2	2	3	3	10개소	173개	999개	1,713개	6,632경간

- 기 간 : 2015. 3. ~ 2015. 12.
- 내 용
  -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노후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세척
  - 방호책, 블라드, 시선유도봉 등 도로·교통부속물 정비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12.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900,000천원(구비)

## 9.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관내 도로상 침하 또는 돌출되어 평탄성이 불량한 각종 맨홀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대상 : 관내 도로상 각종 맨홀(총 22,266개소)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불량맨홀(120개소)
- 사업내용
  - 맨홀의 요철 및 뚜껑의 기울어짐 등으로 도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 맨홀 정비로 도로의 평탄성 확보
- 시행주체 : 마포구(토목과)
- 추진근거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 도로관리과-21952, 2012.12.23)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12.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120,000천원(구비)

## 10.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노후·불량 가로등시설물을 신속히 정비·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간도로 이용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대상 : 가로등시설물
- 사업위치 : 마포구 관내
- 사업규모 : 가로등 7,295등(분전반 291면)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 케이블, 전선관 교체
  - 경사주 및 가로등 부점등 정비 및 수리
  - 사고 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
- 시행주체 : 마포구(토목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 □ 세부추진계획

- 가로등 부점등 수리 등 (24시간이내 민원처리) : 가로등 보수반(직영) 조치
-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노후시설물 개량 :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행

### □ 소요예산

- 사업비 : 350,000천원(구비)

## 11.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보안등 부점등 및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개량으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골목길 이용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대상 : 보안등시설물
- 사업위치 : 마포구 관내
- 사업규모 : 보안등 9,862등
- 사업내용
  - 보안등 부점등 생활민원 처리
  - 노후 보안등기구 및 전선로 보수 및 개량
  - 사고 보안등주 교체
- 시행주체 : 마포구(토목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안등 관리규칙

### □ 세부추진계획

- 보안등 현장점검 등 (24시간이내 민원처리) : 주무관
- 보안등 부점등 수리 및 노후시설물 개량 :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행

### □ 소요예산

- 사업비 : 675,234천원(구비)

## 12.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관내 도로굴착공사 현장의 신속한 복구로 도로기능의 조기회복 등 굴착복구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대상 : 관내 포장도로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보도블록포장복구 30@, 콘크리트포장복구 10@, 아스팔트포장복구 150@
- 사업내용 : 굴착한 포장도로의 신속한 복구
- 시행주체 : 마포구(토목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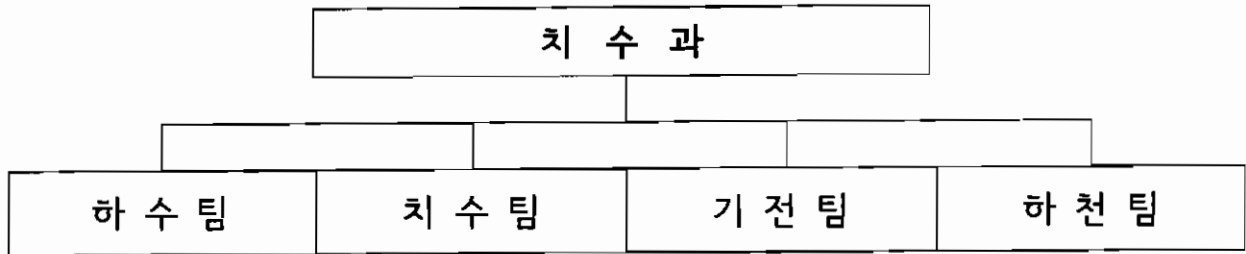
- 2015.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5.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12. : 공사준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1,100,000천원(도로굴착복구기금)

# 치 수 과

□ 조직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별정 (전문)	임기제
정 원	47		1	9	13	9	15		
현 원	43		1	9	26	4	3		

□ 장비현황

준설기	착암기	카타기	제설기	차 량
7조(14대)	1대	1대	1대	5대

□ 하수 · 치수시설 현황

하 수 시 설						치 수 시 설				
관거	암거	U형 측구	맨홀	빗물 받이	횡 단 하수거	하천	펌프장	펌프	수문	유수지 면적
432,184m	37,310m	7,050m	9,706개	17,838개	114개/779m	3개소	10개소	65대	21개소/49문	191,432㎡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재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확대개량 및 보수보강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집중 호우시 잦은 침수가 발생하여 확대개량과 보수보강을 통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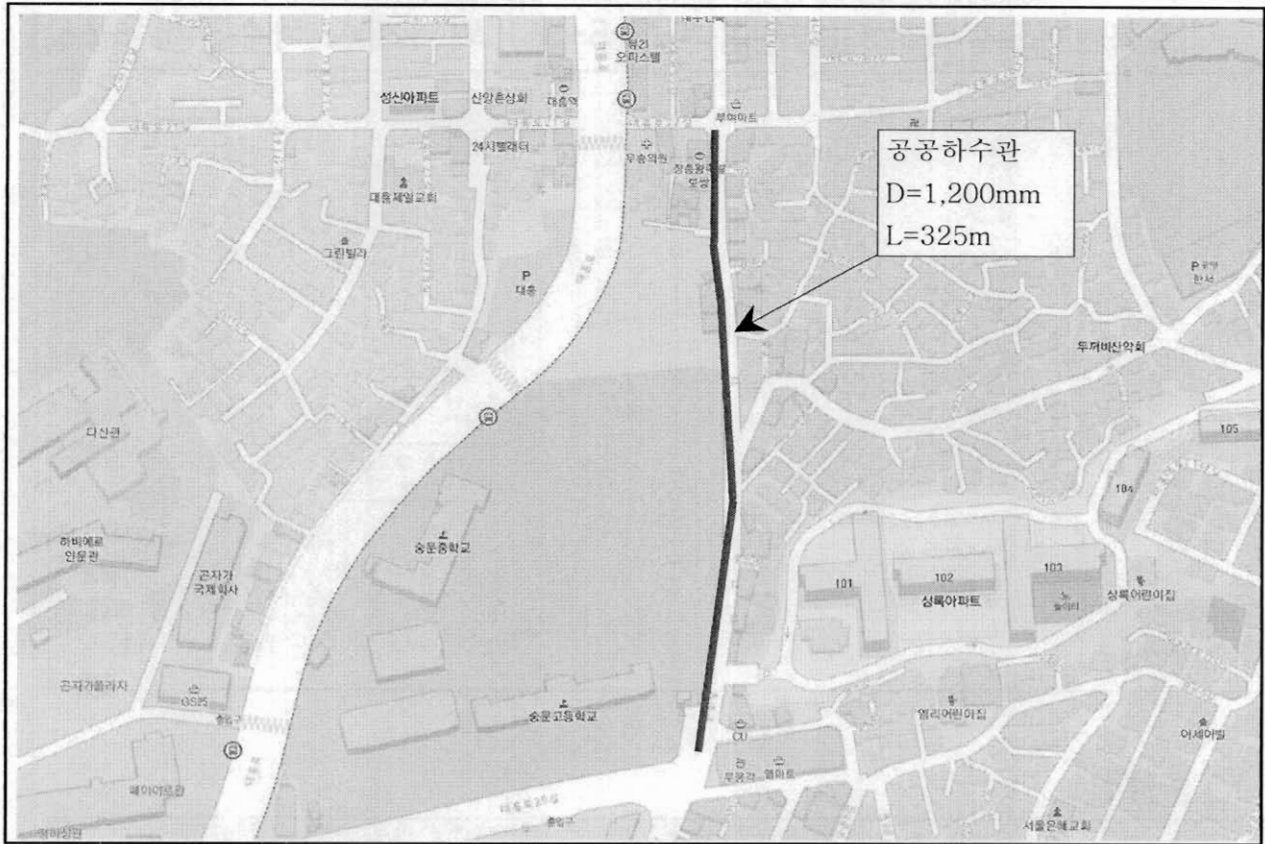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5. 1. ~ 2015. 9.
- 사업위치 : 마포구 승문14길 5(대흥동 6) 외 2개소
- 사업규모
  - 하수관 확대개량 : D=1,000~1,200mm, L=570m
  - 하수암거 단면보수 : ▣1.5×1.0m ~ 1.2×1.0m, L=1,093m  
(단면보수 A=1,330.95㎡, 철근노출 A=12.21㎡)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물량조사, 설계서 작성
- 2015. 2.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5. 9. : 공사 준공

□ 소요예산 : 2,250백만원 (시비)

□ 위치도[승문14길 5(대흥동 6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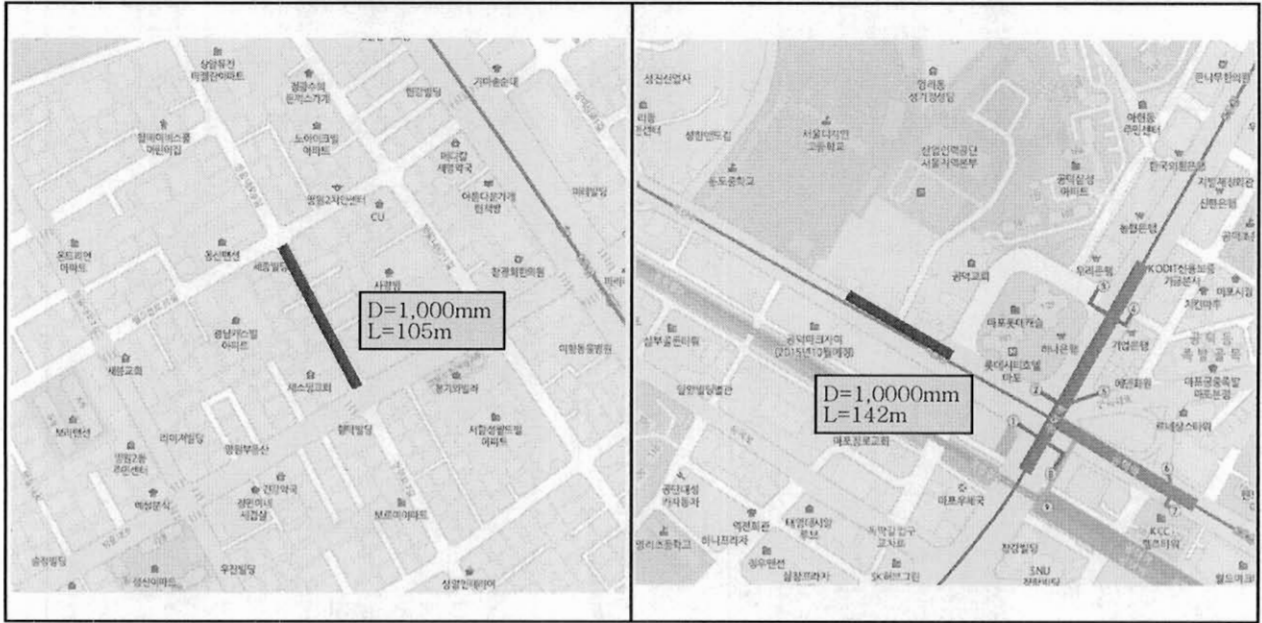


□ 현황사진



□ 위치도

[방울내로79~월드컵북로23(망원동 473-5~35)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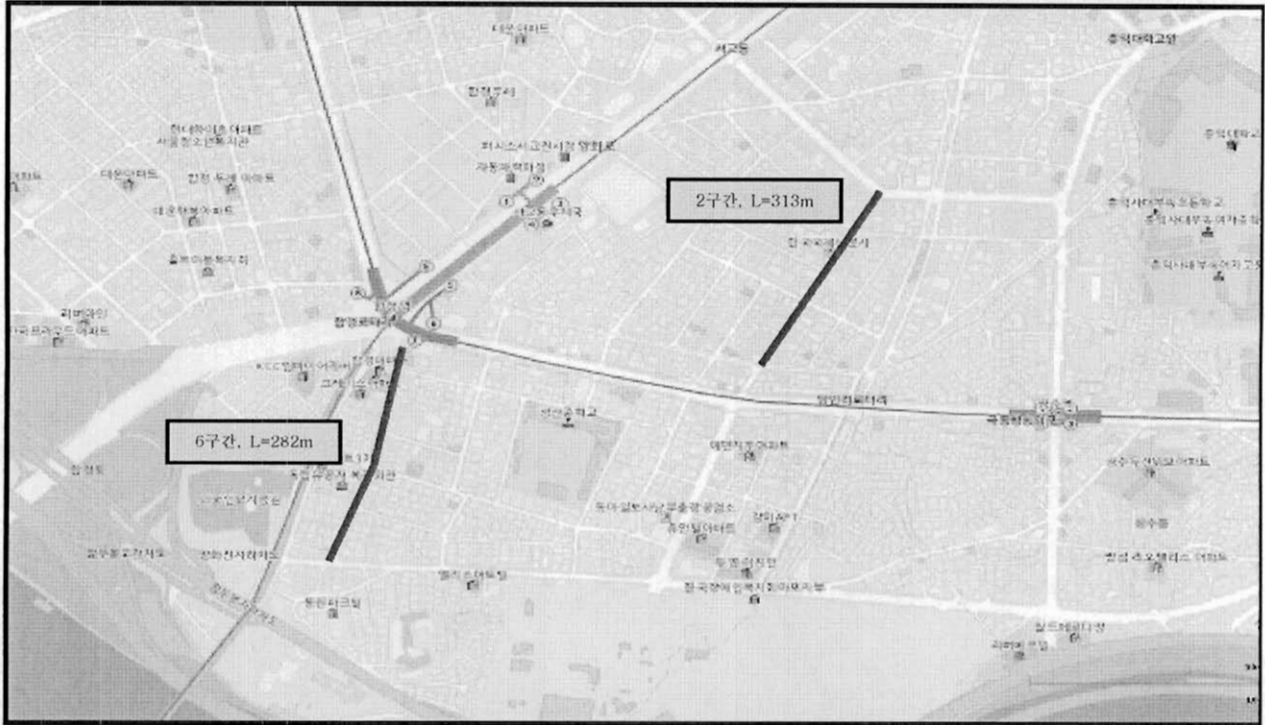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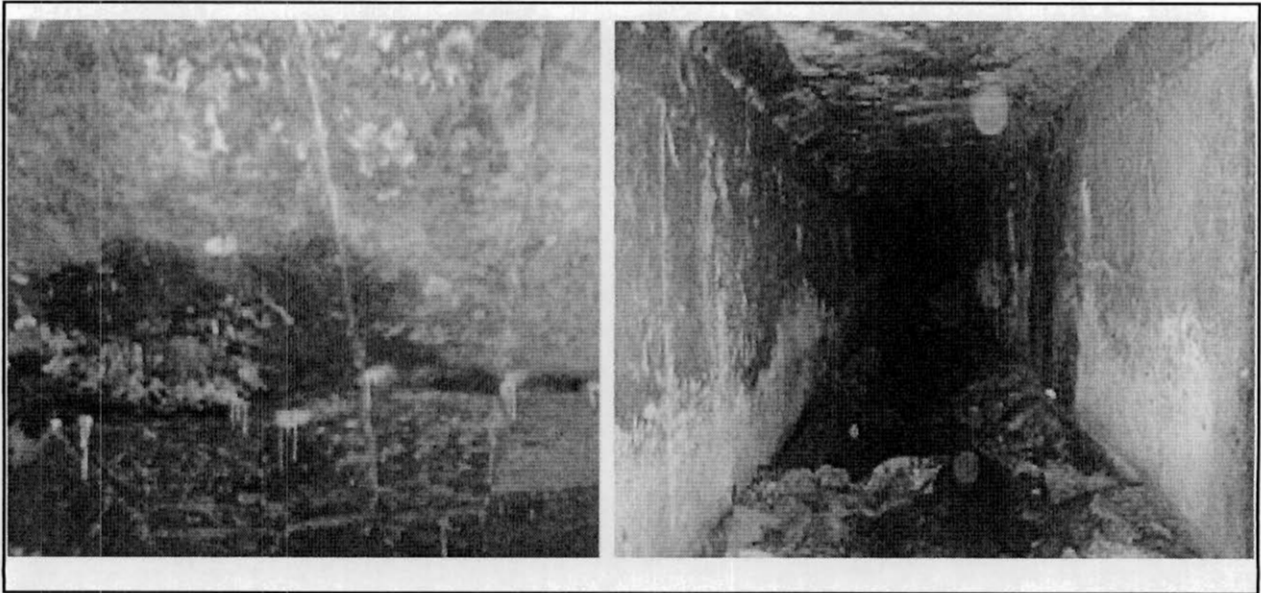


## □ 위치도

[잔다리로21-1(서교동 405-5)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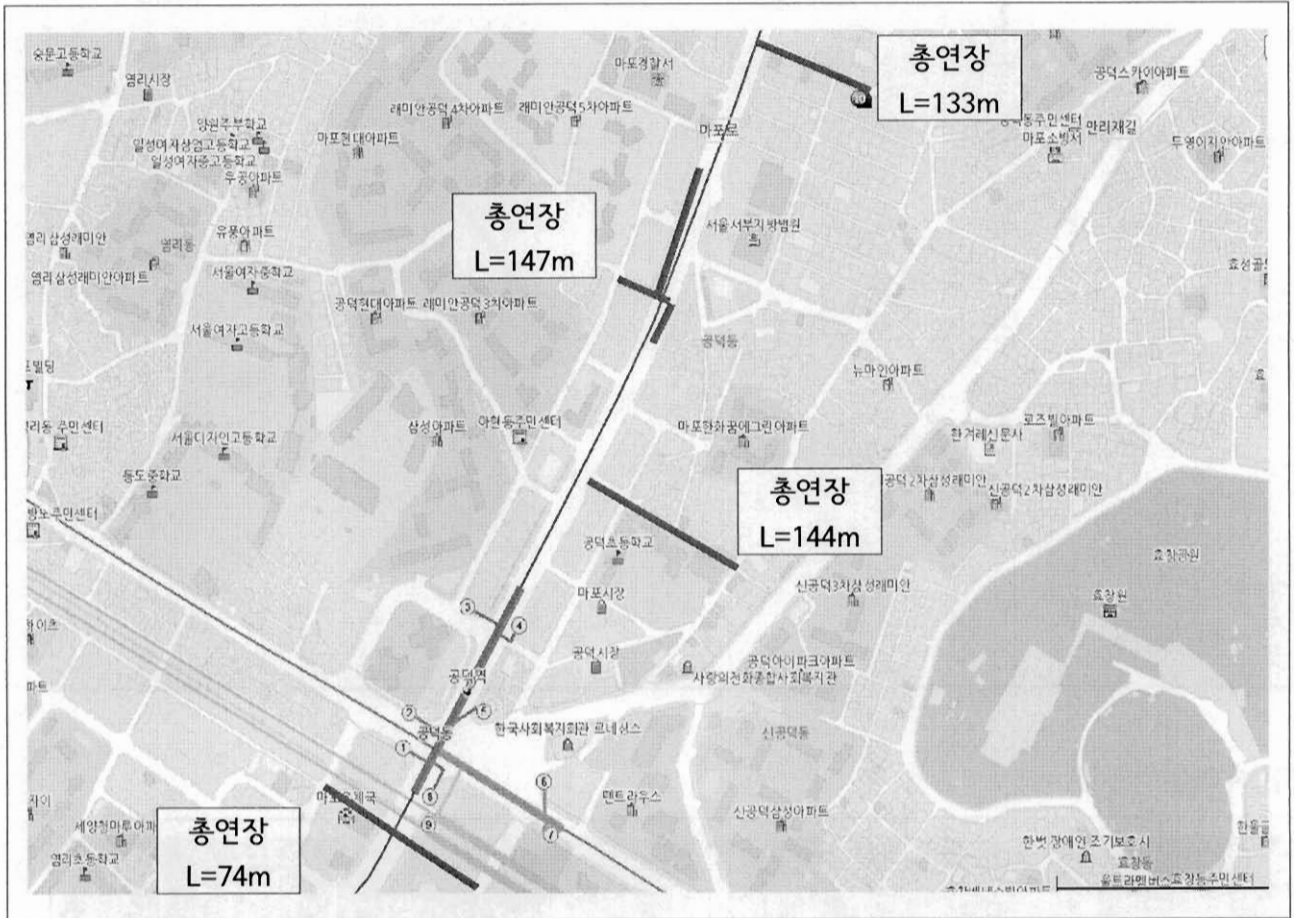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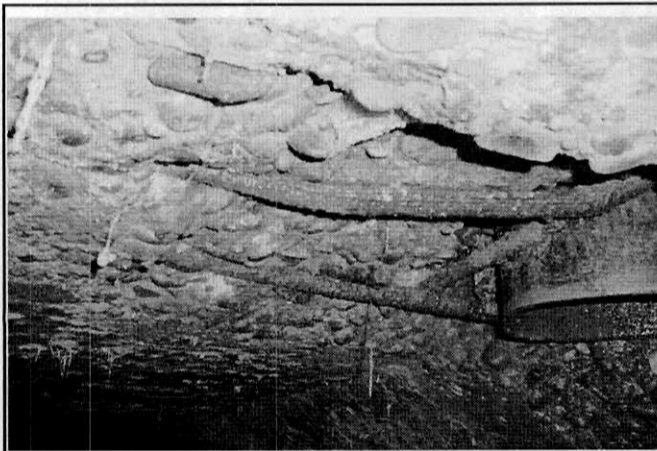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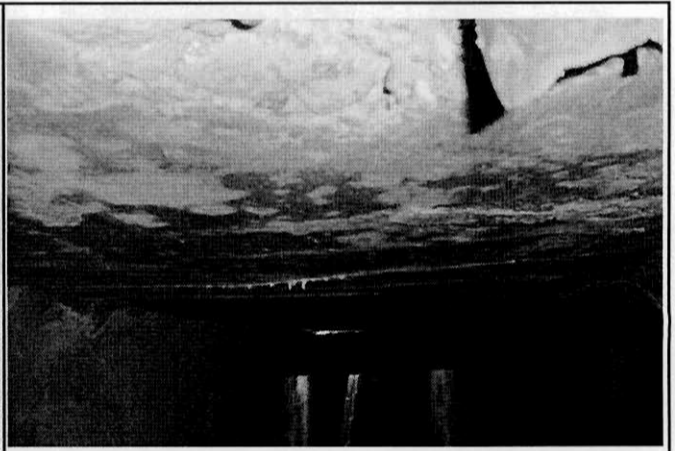
[공덕동 105-90-98 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 □ 현황사진



슬래브 배수구 주변 철근노출



<슬래브 균열, 누수, 백태

## 2. 하수암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도화동 566번지 외 1개소에 통수능 부족 및 노후·불량한 하수암거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대상 시설물의 단면확장 및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비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성 확보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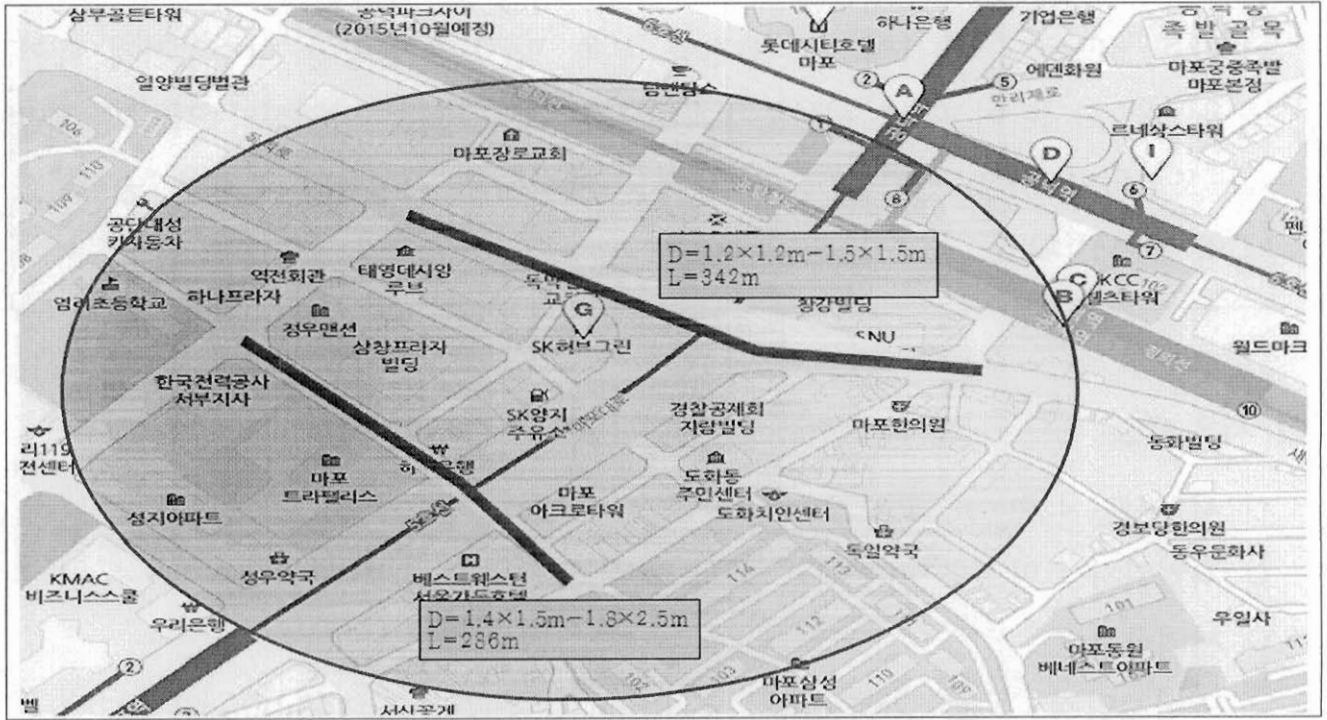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5. 1 ~ 2015. 6
- 사업위치 : 마포구 마포대로 78(도화동 566번지) 주변 외 1개소
- 사업규모
  - 하수암거 : ▣1.2×1.0m~1.5×1.5m, L=497m, A=149,000m<sup>2</sup>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용역 발주
- 2015. 2. : 용역 착수
- 2015. 6. : 용역 준공
- 2016. 3. : 공사 착공

□ 소요예산 : 130백만원 (시비)

□ 위치도[마포대로 78(도화동 566번지) 주변 외 1개소]



□ 현황사진



### 3. 하천 산책로 주변 미관 정비

하천 내 식생하고 있는 조경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위해식물(환삼덩굴, 여뀌 등)의 제거를 통한 산책로 미관 정비로,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1.
- 사업위치 :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
- 사업규모 : 위해식물 제거 A = 179.4@
  - ▶ 홍제천 (연장 2.4km)
    - 규모 : 2,400m x 2m x 2(좌·우안) = 96.0@
  - ▶ 불광천 (연장 1.56km)
    - 규모 : 1,560m x 2m x 2(좌·우안) = 62.4@
  - ▶ 향동천 (연장 1.05km)
    - 규모 : 1,050m x 2m x 1(좌안) = 21.0@
- 사업내용 :
  - 기간제 근로자 고용 : 4인
  - 저수호안 유해식물 제거 : 9개월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2. :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
- 2015. 3. : 사업착수
- 2015. 11. : 사업종료

#### □ 소요예산 : 51백만원 (구비)

## 4. 수방양수기 지원시스템 개선

집중호우시 단시간 집중되는 수방장비의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침수 취약 지역의 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수해없는 마포” 구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11월
- 양수기 지원규모 확대 : 현 702대 → 852대 상향(150대) 추진
  - 현재 보유(702대) : 수방양수기(수중펌프) 639대, 엔진양수기 63대
  - 노후되고 사용 불편한 엔진펌프 대체 및 거점지원관리소(통장) 전동 확대 실시
- 사업내용
  - 수방장비 긴급지원 시스템 확대 지원 개선
    - 상습 고정 침수세대 지원 확대(34대 → 60대)
    - 거점지원관리소(통장)의 전동 확대 운영(4개동 66가구/대 → 16개동 160가구/대)
  - 수방용 양수기 임대관리 전산화 시행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양수기 지원개선으로 분실 최소화 및 사용실적 분석
    - 실시간 보유량 파악으로 유사시 필요한 수요처에 즉시 지원 가능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4. : 구매발주 및 납품
- 2015. 5 ~ 11. : 수방용 양수기 임대지원

□ 소요예산 : 41백만원 (전액 구비 - 기금 )

## 5. 성산유수지 공원화 설계용역

주변 아파트의 경관 저해 및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성산유수지에 대하여 복개를 통해 체력단련시설 및 경관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 친화적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9월
- 사업대상 : 성산빗물펌프장내 성산유수지
- 사업위치 : 마포구 성중길 82(성산동 445)
- 사업규모 : 면적 2,795m<sup>2</sup>
- 사업내용 : 유수지 복개후 마을어귀마당 개념의 소공원 조성
- 시행주체 : 마포구
- 추진근거 :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시장방침2호)  
(하천관리과-21620(2013.1.11))

###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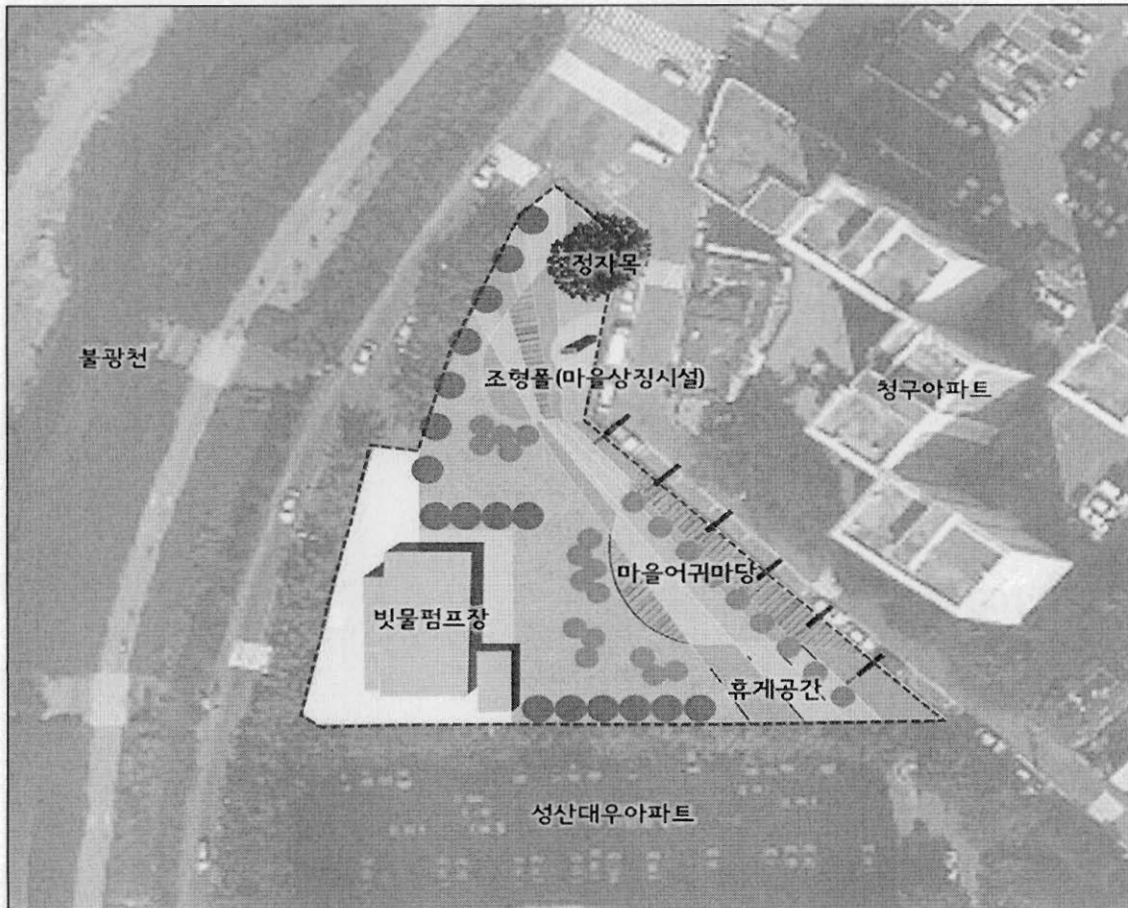
- 2015. 2. : 설계용역 발주
- 2015. 3. ~ 9. : 용역수행
- 2015. 9. : 2016년 서울시 본예산 공사예산 반영 추진
- 2016. 2. ~12. : 공사추진(예정)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시비 )

## □ 위치도



## □ 조성계획도(2013 서울시 우수지 활용계획)



## 6. 수방대비 체계확립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관내 전역
- 사업규모
  - ▶ 풍수해 사전대비 취약시설물·지역 점검실시 (우기전 3회)
    - 하천 및 수방시설물, 풍수해 취약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
  - ▶ 우기대비 수방관련 공무원 교육 및 홍보
    - 공무원, 시설물관리자, 취약지역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실시
  - ▶ 수방민간위탁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 6개 권역 6개조 운영 (하수도구조물, 하천, 준설연간단기업체 활용)
  -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대상 : 관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주택
      - 역류방지시설 설치 800개소
      - 물막이판 설치 1,200m
  - ▶ 저지대 하수역류주택 양수기 지원
    - 상습침수세대 양수기 고정배치 : 60대
    - 전 동 거점지원관리소(통장) 배치 운영 : 16개동 160대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수방민간위탁·양수기 활용계획수립 및 용역발주(3개업체)
- 2015. 2.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발주 시행
- 2015. 2. ~ 5. : 풍수해 사전대비 취약시설물·지역 점검계획수립 시행
- 2015. 3. 15. ~ 11. 14. : 수방민간위탁 운영
- 2015. 4. : 우기대비 수방교육 및 홍보 실시

- 2015. 4. : 침수우려세대 및 거점관리소(통장) 양수기 배부
- 2015. 5. ~ 11.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구비 300백만원, 시비 200백만원)

- 수방민간위탁 용역 : 100백만원(구비)
- 침수방지시설설치 : 400백만원(시비 50%, 구기금 50%)

## 수방민간위탁 권역별 위치도



## 7. 동교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서울시의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교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하여 노후·불량한 하수관거 개량을 통한 효율적인 하수관로 성능을 개선 배수불량 해소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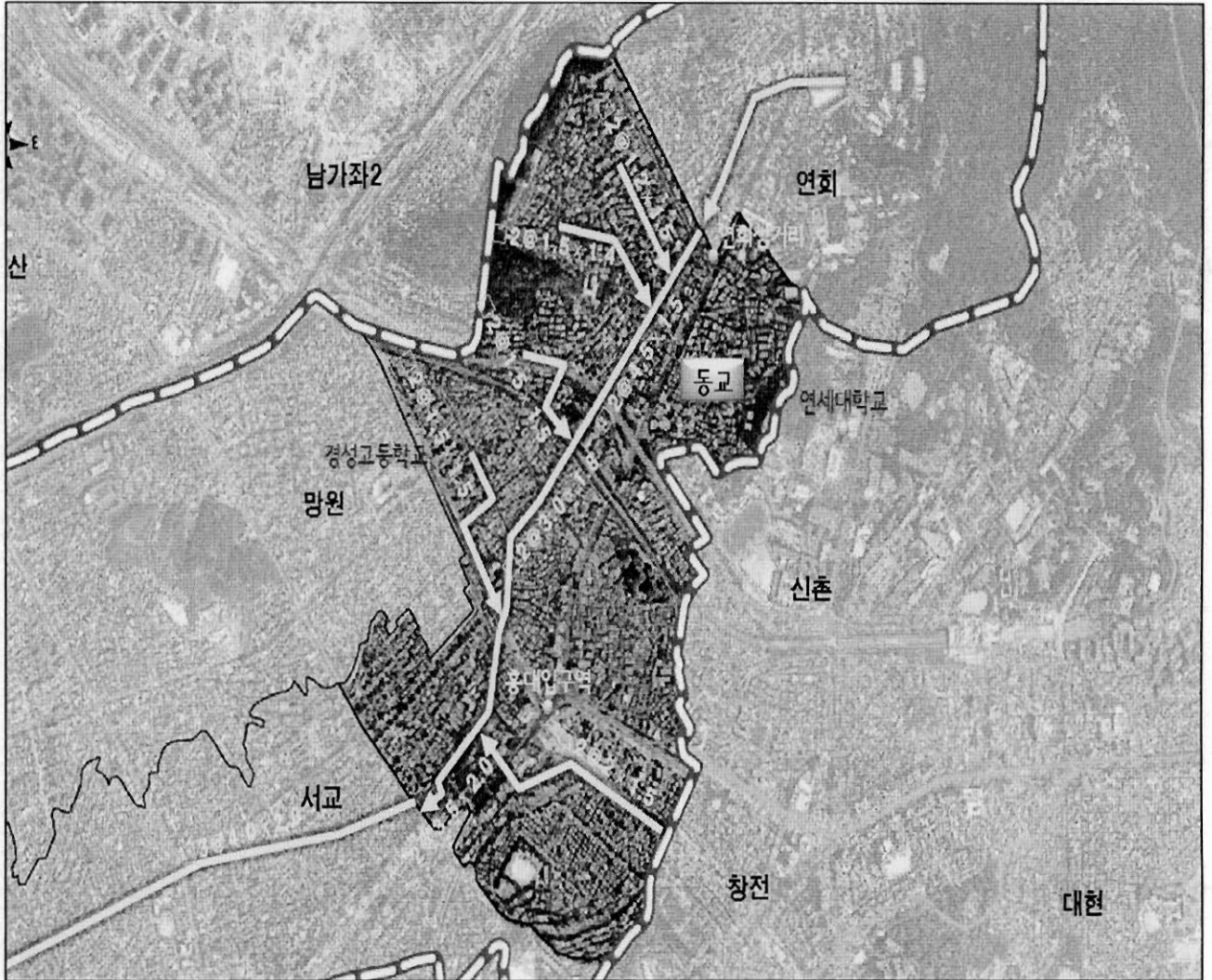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4. 7. 1. ~ 2015. 12. 31.
- 사업대상 : 동교배수분구 내 하수관거
- 사업위치 : 동교배수분구(마포구 연남동, 서교동 일원,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
- 사업규모 : A=194.45ha, L=3.71Km
- 사업내용
  - 노선측량(중,횡단) : L=3.71Km
  - 관거 내부조사 : 46.1Km
  -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 수립

### □ 세부추진계획

- 2014. 7. : 용역 착수
- 2015. 1. ~ 10. : 기술 자문회의
- 2015. 12. : 용역 완료
- 2016. 3. ~ :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시비)

□ 위치도 (동교배수분구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



## 8. 망원배수구역 배수체계 개선사업(기본계획수립)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방안 기본계획을 수립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1. ~ 2015. 12. 31.
- 사업대상 : 망원배수구역 내 하수관거
- 사업위치 : 망원배수구역(마포구 망원동, 성산동, 서교동 일원,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
- 사업규모 : 관거 현황조사 L=16.00Km, 배수체계 개선방안 수립 A=621ha
- 사업내용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강우분석
  - 내수침수 발생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 배수체계 개선방안(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 세부추진계획

- 2014. 7. : 용역 착수
- 2015. 1. ~ 10. : 기술 자문회의
- 2015. 12. : 용역 완료
- 2016. 3. :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시비)



## 9. 유입시설 개량 및 신설(연간단가)

관내 간선도로상의 유입시설(빗물받이 등)을 개선하여 우수흐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통수 단면 확대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및 차량 등 안전사고 예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빗물받이 개선 150개소
  - 연결관 부설 D=300mm, L=100m
- 사업위치 : 관내 주요 간 · 지선도로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물량조사, 설계서 작성
- 2015. 2.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5. 12. : 공사 완공

### □ 소요예산

- 사업비 : 200백만원(구비)

## 10. 하수관로 준설(연간단가)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적기 준설로 재해예방,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하수관로 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오수정체로 인한 악취저감 및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침수 피해 등 수해예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관내 공공 하수관로, 빗물받이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50km, 빗물받이 준설 23,000개소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관내 하수관로 준설계획수립
- 2015. 1. : 공사 발주
- 2015. 2. : 공사 착공
- 2015. 12. : 공사 준공

### □ 소요예산 : 1,150백만원 (구비)

- 하수도 준설 1,000백만원, 빗물받이 준설 150백만원

## 11. 하수시설물 긴급복구(연간단가)

관내 하수관로 긴급 복구 및 유지관리용 자재 확보로 사전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관내 하수시설물(하수관거, 빗물받이, 맨홀 등)
- 사업위치 : 관내 전 지역
- 사업규모 : 하수관 개량 1,000m, 하수관 CCTV 조사 5,000m  
불량맨홀 정비 50개소  
시멘트 외 7종 자재 구매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물량조사, 설계서 작성
- 2015. 2.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5. 12. : 공사 완공

### □ 소요예산 : 1,218백만원 (구비)

- 하수시설물 1,100, CCTV 30, 불량맨홀 40, 자재 구매 48

## 12. 불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2013년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후 일부 미 조성된 잔여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하천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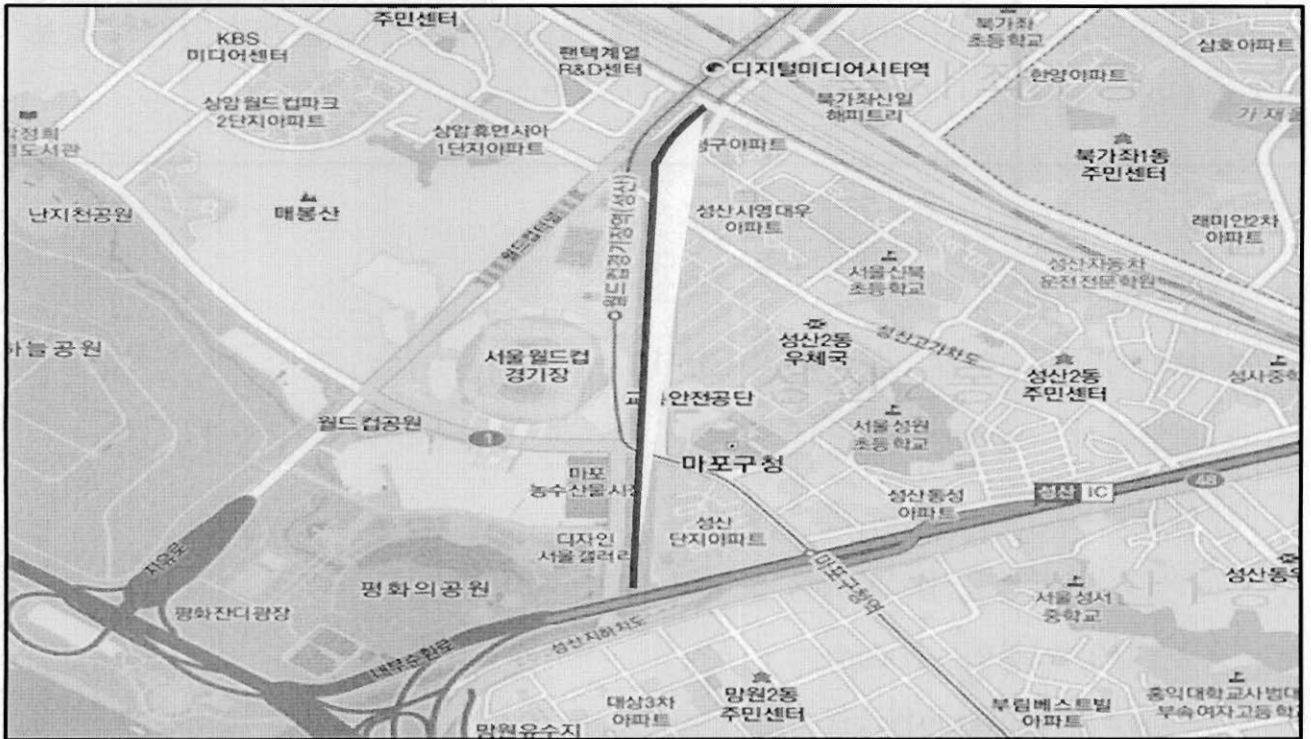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0.
- 사업위치 : 불광천
- 사업규모
  - 저수호안 나무방틀 설치 L=100m
  -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 A=150m<sup>2</sup>
  - 저수호안 초화류 식재 A=3,050m<sup>2</sup>

###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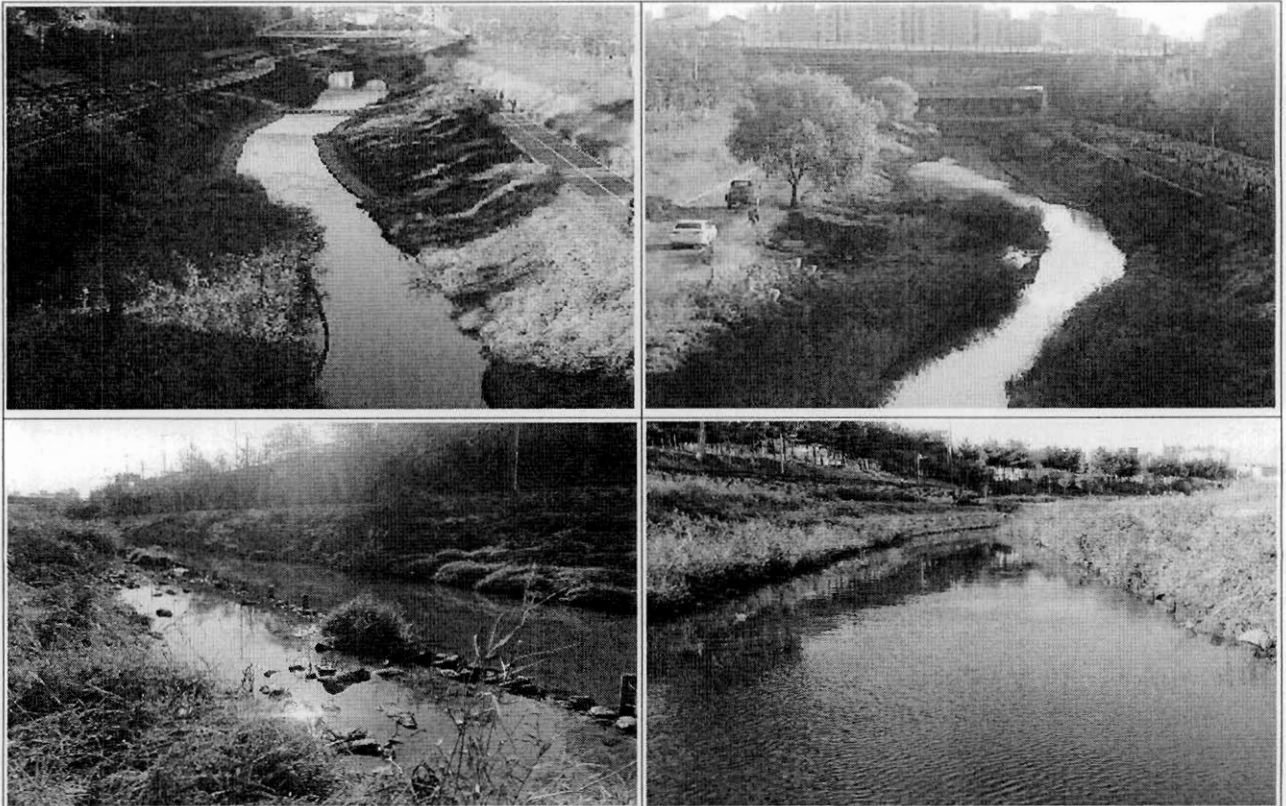
- 2015. 1. : 공사 발주
- 2015. 2. : 공사 착공
- 2015. 10. : 공사 완공

###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시비)

□ 위치도(불광천)



□ 현황사진



### 13. 하천시설 긴급복구(연간단가)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하천시설물의 복구와 하천산책로 이용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하천미관 증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위치 :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
- 사업규모
  - 석축쌓기(찰쌓기) 200m<sup>2</sup>, 조경석 쌓기 100ton
  - 돌붙임(찰붙임) 200m<sup>2</sup>
  -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0m
  - 하천준설 1,000m<sup>3</sup>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물량조사, 설계서 작성
- 2015. 2.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5. 12. : 공사 완공

#### □ 소요예산 : 200백만원 (구비)

## 14.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펌프장 10개소 개량정비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제작사 안전점검 1회, 전문기관 안전진단 1회, 자체점검(수시)
  - 전기설비안전진단,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기계, 전기, 통신 및 건축물 보수 유지관리 등

### □ 세부추진계획

- 2015. 2. ~ 3. : 제작사 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시행
- 2015. 3. ~ 5. : 우기 전 시설물별 보수개선공사 시행
- 2015. 5. ~ 10. :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 2015. 5. ~ 10. : 수방기간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2015. 10.~ 11. : 우기 후 시설물 보수 및 개선공사

### □ 소요예산 : 330백만원(구비)

-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고장설비 보수, 도장공사, 시설개선 등) : 250백만원
- 전기설비 안전진단 : 45백만원
-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35백만원

## 1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비상사태 발생시 대체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시설물 정비로 항시 가동체계와 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정부지원시설 : 7개소, 자치구시설 : 5개소)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사업규모 : 사후관리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및 지하수법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 2015. 3. : 건축물 개선(한마음공원)
- 2015. 3. : 사후관리공사(관정 청소 및 정비)
- 2015. 5. : 상반기 시구 합동점검
- 2015. 10. : 하반기 시구 합동점검
- 2015. 1.~ 12. : 정기 가동점검(월2회) 및 유지관리

□ 소요예산 : 48백만원(구비 50%, 시비 50%)

## 1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지하수개발·이용공 143개소 및 보조관측시설 10개소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사업규모 :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수질검사,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및 지하수법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2015. 1.~ 12. : 지하수관측시설 점검용역 시행
- 2015. 2.~ 11. :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연 2회)
- 2015. 3.~ 4. : 수동관측시설 자동화(다솜공원, 느티나무공원)  
- 휴대용장비를 통한 인력축정을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선
- 2015. 5. :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 2015. 11. :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 □ 소요예산 : 45백만원 (구비)

## 17. 동절기 복지시설 및 침수취약가구 시설 점검

빗물펌프장의 기계, 전기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일제 점검 및 정비로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우기의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동청사 15개소, 사회복지시설 387개소, 침수방지시설 558개소, 독거노인가구 119가구, 중증장애인가구 38가구
- 사업내용
  - 전기시설 및 보일러 시설 점검
  - 침수시설 수증펌프 및 집수정 등 점검
  - 경미사항은 현장 시정, 중요사항은 현황안내 및 정비 유도
- 투입인원 : 빗물펌프장 근무자 22명

### □ 세부추진계획

- 2014. 11. : 동절기 빗물펌프장 인력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 2014. 12. ~ 2015. 3. : 점검 및 정비 시행
- 2015. 4. : 결과수합 및 종합보고

### □ 소요예산 : 비예산

## 18. 망원2빛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망원2빛물펌프장내 내용연수(15년이상) 초과된 펌프시설의 유사시 갑작스런 가동중단 등에 대비하여 노후펌프를 교체함으로써 유사시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하여 집중호우에 대비코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망원2빛물펌프장(마포구 동교로 7)
- 사업규모 : 모터펌프 800HP×3대 교체
- 사업기간 : 2015. 1월 ~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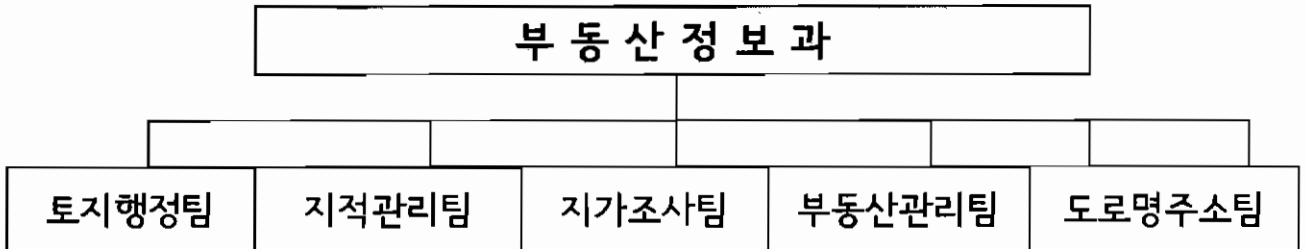
### □ 세부추진계획

- 2015. 1월 : 발주 설계서 작성 및 심사
- 2015. 2월 : 물품 발주
- 2015. 3 ~ 7월 : 계약 및 납품시행
- 2015. 7월 : 펌프 시운전 및 준공

### □ 소요예산 : 1,440백만원 (시비)

# 부동산정보과

□ 조직 현황



□ 인력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전문)	임기제
정원	26		1	6	8	6	5		
현원	25		1	9	10	3	2		

□ 지적공부 관리현황

구분	토지(임야) 대장(전산)	지적(임야)도 (전산)	경계점좌표 등록부	구 토지대장	폐쇄도면
매수	49,391	782	2,196	83,675	1,771

□ 위원회 관리현황

위원회명	계	구성원(명)		임무
		공무원	외부 인사	
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15	6	9	토지 및 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심의의결
마포구도로명주소위원회	9	4	5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의결
마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5	4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에관한 사항 의결
마포구지적재조사위원회	9	4	5	지목의변경,조정금의 산정에 관한사항 의결
마포구경계결정위원회	10	4	6	토지경계설정에 관한사항 의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현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규제에 따른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구민들의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대상 : 관내 토지 중 소유자 2인 이상의 공유토지(나대지 제외)
- 추진근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제정)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2. : 2015.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 3. ~ 4. : 특례법 운영 · 실시 홍보(내고장마포소식지, 홈페이지)
- 2015. 5. ~10. :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상권리 및 현장확인 등 정밀조사 실시  
[조사대상필지 : 아현동 326-2번지 외 30건]
- 2015. 7. ~ 8. : 공유토지분할 운영 안내 홍보(i-tv,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 2015. 1. ~12. : 토지소유자 분할신청독려를 위한 상담민원인 현장출장 추진
- 2015. 1. ~12. : 마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운영 실시  
[특례법 운영기간 : 2012. 5. 23. ~ 2017. 5. 22.]

### ▣ 소요예산

- 사업비 : 3,280천원
- 위원회위원 수당 : 1,680천원(70,000원x6명x4회)
-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및 조사운영비 : 1,600천원

## 2.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소유권 분쟁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대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9.16.제정, 2012.3.17.시행]
- 사업비 : 2,394천원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3. : 실시계획수립
- 2015. 4. ~ 7. : 주민설명회 개최
  -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개최(30일 이상 주민 공람)
- 2015. 8. ~ 11. : 토지소유자 동의 요청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
- 2015. 12.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요청 (마포구→서울시)
  -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면적대비 동의를 2/3 이하 시 사업지구 지정 요청 불가

### □ 소요예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1,050천원(70,000원×5명×3회)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비 : 1,344천원

### 3.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

####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5. 1. ~ 2015. 12.
- 조사대상 : 46,938필지(표준지 1,292필지, 개별지 45,646필지)
- 조사내용
  - 토지별 토지특성(이용현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을 조사하여  
KLIS프로그램을 통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 결정·공시
  -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 2015. 2. 25.
  - 개별공시지가(마포구청장) : 2015. 5. 29.(1.1.기준) 2015. 10. 30.(7.1.기준)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2014. 11. 11. ~ 2015. 5. 2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5. 5. 29. 공시
-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2015. 6. 9. ~ 10.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5. 10. 30. 공시

#### □ 소요예산 : 51,755천원(구비), 국비 미정

- 개별공시지가조사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 4. 고객 만족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민원행정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중심의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코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2. ~ 12. 31.
- 사업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단위: 개소)

총계	유형별 중개업자			비 고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1,041	931	100	10	

- 사업내용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준수여부 및 위반행위 등 민생저해 중점단속
  -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시행 및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비
  -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2. : 부동산 거래 및 중개문화 선진화사업 계획수립
- 2015. 2. ~ 3.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정비
- 2015. 3. ~ 5. : 봄 이사철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2015. 3. ~ 5. :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 2015. 6. ~ 8. : 모범·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실태점검
- 2015. 9. ~11. : 가을 이사철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 소요예산 : 5,958천원

- 중개수수료율표 제작 및 홍보 리플렛 제작 : 3,498천원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포상금 등 : 2,460천원

## 5. 도로명주소 시설물 효율적 관리

도로명주소 전면시행한 2014년 이후 안내시설이 부족한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대상 : 도로명주소 시설물 28,632개소

(단위:개소)

구분 \ 시설별	계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소계	일반형	벽면형		
설치수량	28,632	1,961	1,489	472	3	26,668

### ○ 사업내용

- 도로명(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고지·고시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접수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상반기, 하반기) 등 시설물 정비
- 주택밀집지역 등 벽면부착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 주소정보 관련 관리시스템 데이터 정비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 □ 세부추진계획

- 2015. 1. ~ 2. :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등 세부계획 수립
- 2015. 3. ~ 5.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1차)
- 2015. 6. ~ 7. : 전수조사 결과 조치(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산D/B 수정 등)
- 2015. 8. ~ 10.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2차)
- 2015. 11. : 전수조사 결과 조치(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산D/B 수정 등)
- 2015. 1. ~ 12.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실시(연중)

### □ 소요예산 : 52,943천원

-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보수비 : 25,892천원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 유지관리비 등 : 27,051천원

#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청소년·학교·직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7조)
- 나.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8조)
- 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4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개정근거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11. 13. ~ 12. 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4.12.11)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생활화 하고”를 “생활화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마포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포구민”을 “구민”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마포구민”을 “구민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제3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

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u> <u>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의 자 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 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 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마포구민----- ----- ----- 생활화하고- ---- ----- -----.</p>
<p>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 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 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 포구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 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 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 별시 마포구청장----- ----- ----- 서울특별시 마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 -----.</p>
<p>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 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3조(경비의 지원) ① ----- 구민----- ----- ----- 범위에서 ----- 지급할- -----.</p>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 6. (생략)

<신설>

<신설>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② -----  
-----.

1. 구민의 -----

2.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  
-----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6년 회계부터 적용)
-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15명 이내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

- 예산편성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보조사업자와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 등

**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제20조)**

- 보조사업 공고, 신청자 결정,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관하여 규정

**마.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21조~제24조)**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과 사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26조)**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함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제32조의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 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4. 11. 20. ~ 12. 10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개선사항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및 위원의 회피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해촉) 마련

- 조치사항 : 권고사항 반영(제9조 신설)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법 제 17조제2항 각 호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

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안건을 부치고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② 구청장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생기게 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총 경비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 또는 경비배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무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

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

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에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지방보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

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  
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